

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1. 3. 15 발족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 및 활동근거를 마련
-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

3. 주요내용

-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(제2조)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(제3조)
- 지역발전 정책개발, 정책건의, 제도개선,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기능(제4조)
-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, 연구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(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
- 포항시정책자문단설치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개발이나 건의,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.

- 현재 『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』는 규정으로 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정책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“위원회 실비 변상” 조항 등을 삽입한 조례안입니다.
- 광역시도 및 포항시 등에서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(정책자문단설치조례 - 포항, 광주, 서천군
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 - 부산)